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9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은림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영철, 김재진,  
박 석, 박성연, 송경택,  
신복자, 윤영희, 이상욱,  
이성배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금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 또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의2)
- 나.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

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u>  <u>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u>  <u>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u>  <u>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p> <p>1. <u>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u>  <u>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u>  <u>법으로 죽이는 행위</u></p> <p>2. <u>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u>  <u>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u>  <u>죽이는 행위</u></p> <p>3. <u>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u>  <u>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u>  <u>하는 행위</u></p> <p><u>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u>  <u>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u>  <u>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포획 ·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u>  <u>상처를 입히는 행위</u></p> <p>2. <u>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u>  <u>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u>  <u>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u></p>

<신 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상사업

2. (생략)

③·④ (생략)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 금지) 중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중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